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가단1083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0. 11. 13.

판결 선고2021. 1. 2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250,813원 및 그 중 4,294,508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10.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2. 4. 25. 피고 B에게 계약만료일을 2014. 12. 22.로,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을 연 36.5%로 각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D 주식회사는 2013. 12. 26. E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30.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18. 11. 28.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2020. 2. 10.을 기준으로 15,250,813원이고, 그 중 원금은 4,294,508원이다.

나. 주식회사 F은 2011. 10. 27. 피고 B에게 대출기간을 12개월로, 대출이자율을 연 33.5%로, 연체이자율을 연 39%로 각 정하여 4,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금채권은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를 거쳐 2016. 7. 12.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89177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30.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3,125,214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어머니인 I은 2017. 5.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 J, K(각 상속지분 1/4)가 있다.

라.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7. 10. 18.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0. 19. 피고 C 앞으로 2017. 5.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분인 1/4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15,250,813원 및 그 중 원금 4,294,508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대출금채권과 판결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시 피고 B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신축 당시 피고 C의 비용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조미옥

별지